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광향기 의원

□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향기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는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정원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도시화, 개인화, 초고령화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아파트 주거문화 특성상 정원에서 누리는 여가문화 활동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 이에 민간정원을 조성, 공개할 때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여 민간정원 조성 및 공개를 장려하여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항에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